예 산 총 칙

201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51,260,477	28,537,814
일반회계	832,553,201	24,976,596
특별회계	118,707,276	3,561,218
공기업특별회계	82,836,348	2,485,09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5,776,085	1,373,283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485,368	44,56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5,574,895	1,067,247
기타특별회계	35,870,928	1,076,128
주택사업특별회계	67,514	2,025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3,405,405	102,162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6,982,061	509,46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409,824	222,295
수질개선특별회계	7,419,449	222,583
기반시설특별회계	538,675	16,160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0	0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48,000	1,440

제 2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과 같다.

제 4 조 201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3,000백만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715,226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 교부되는 국·도비와 교부세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